

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

의 안	
번 호	1937

제출일자 : 2021. 4. 5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보고이유

-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 모집 공고 결과 현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자우버 단독 신청하여 민간 위탁 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,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위탁 건에 관한 의회보고

2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104조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~ 제6조

3. 위탁 내용

- 위탁대상 : 현수막 지정게시대 123개소 501면
 - 공공용 게시대 : 58개소 187면
 - 상업용 게시대 : 65개소 314면
- 수탁기관 : 주식회사 자우버
- 운영방식 : 민간위탁
- 수탁기간 : 2021. 4. 1. ~ 2024. 3. 31.

○ 주요업무

- 현수막 게시 신고의 인터넷 접수시스템 구축 및 관리
-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수리·보수에 관한 사항
- 현수막 게시 신고의 접수·처리 및 신고필증 교부
- 현수막 게시에 따른 신고 수수료 및 도로점용료 납부
- 기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등

4. 민간위탁 재위탁 경위

○ 2021. 2. :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(공고 2회 / 1개 기관 접수)

※ 신청기관 : 주식회사 자우버

○ 2021. 3.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(재위탁 적정 판단)

☞ 평가결과

- 주식회사 자우버 : 90.6점 재위탁 의결(70점 이상시 적격)

○ 2021. 3. 31. : 협약 체결(위탁기간 : 2021. 4. ~ 2024. 3.)

5. 향후일정

○ 2021. 4월중 : 협약서 공증 및 공보 게재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

제16조(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) ① 군수는 「대구광역시조례」(이하 “시 조례”라 한다)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,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 그러하지 않을 경우 위탁절차는 제14조(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)에 따른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대상기관의 인력·기구 및 재정부담능력
2. 수탁대상기관의 시설·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
3.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4. 지역간 균형분포 등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, 성질,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

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
제6조(민간위탁심의위원회)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“이라 한다) 소속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